

##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?

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
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습니다.

### ● 학교운영위원회란?

-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입니다.
-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·공·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·운영합니다.
-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## Q2. 학교운영위원회도 자격이 있나요?

학부모위원	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교원위원	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지역위원	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

-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## Q3.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?

-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(기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도 가능)
-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(주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)
- 학부모위원회 또는 교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

## Q5.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?

- 학교운영위원회는 국·공립학교의 경우 상의기능을, 사립학교의 경우 심의·자문기능을 합니다.
- (학교발전기금 관리·사항은 국·공·사립학교 모두 심의, 의결)

### ● 주요역할 ●

(초·중등교육법 제32조)

-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(사립학교 자문)
-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교과용 도서, 교육자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복, 체육복,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 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(사립학교 제외)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(사립학교 제외)
- 학교운영자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## Q1.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?

학생수	위원회 수	선임수요 및 출정고 및 특성화고
200명 미만	5~8명	30%~40%
200명 이상 1천명 미만	9~12명	20%~30%
1천명 이상	13~15명	30%~50%

## Q4.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?

- 학교별로 구성비율도 다릅니다.

구분	일반학교	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
학부모위원	40%~50%	30%~40%
교원위원	30%~40%	20%~30%
지역위원	10%~30%	30%~50%

-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: 2년, 한차례만 연임 가능
- 지역위원 : 2년,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차례만 중임 가능(총4년)
- 임기개시일 : 4월 1일
- 보궐위원의 임기 :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: 1년, 연임 가능

## Q6.

###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뺏나요?

-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자인에 해당됩니다.
-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업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(급품 등 수수 금지,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)을 받게 됩니다.
- 다만 공무수행자인은 교직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'공무 수행에 관하여만' 법의 적용을 받게되며,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#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

##### 학교운영 참여권

-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와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·견의

##### 중요사항 실의·자문권

-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

##### 보고 요구권

-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개 시행하거나, 심의·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

####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

##### 회의 참석의 의무

-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
\*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퇴직 결정

#####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
-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알선 금지

\* 운영위원회 의결로 퇴직 결정 자격 상실

## Q7.

###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법!

-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사항 심의 시,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기회 부여
-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
-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안건 제출 전 학생 의견 사전 청취